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장기성장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**변경 사유** : ①운용전문인력 변경(이양병 → 정무일)  
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
 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
 ④반기 기준으로 갱신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0. 7. 22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기준 일 기재 및 업데이트	-	<u>2020.5.31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3.20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	이양병 2019. 12. 31. 기준	정무일 <u>2020. 6. 30. 기준</u>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해당 클래스만 기재	-	<u>해당 클래스만 기재 및 오 기 정정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이양병	정무일
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12. 31. 기준	<u>2020. 6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이양병	정무일
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12. 31. 기준	<u>2020. 6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-	<u>2017.07.27~2020.07.21</u>
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		<u>: 이양병</u> <u>2020.07.22~현재 : 정무 일</u>
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누락 기재	-	ㄷ
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사항 반영	1)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	1)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
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	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	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동종유형 총보수 기준 일 기재 및 업데이트	-	<u>2020.5.31 기준</u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	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3.20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3.20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반기 기준으로 갱신	-	<u>2020.3.20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12. 31 기준	<u>2020. 6. 30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		
나. 주요 업무 (3) 업무위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			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원에</u>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</p>	<p>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</p>
		<p>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</p>	<p>- <u>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</u></p>

---

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〈신설〉

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
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
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

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

---

의일 익명업일의 투자신탁  
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  
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 
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  
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  
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  
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  
함  
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  
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  
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
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  
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 
함  
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 
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 
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  
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  
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 
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  
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 
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 
수 있음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

에 관한 사항

가. 정기보고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  
(2) 자산운용보고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른 변경사항 반영  
(3) 자산보관 · 관리보고  
서

한국예탁원  
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 
방법으로

전자등록기관  
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 
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  
로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

에 관한 사항

나. 수시공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  
(1) 신탁계약변경에 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른 변경사항 반영  
한 공시

한국예탁원

전자등록기관

